

#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 1. 들어가며

2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선고 전에 발의됐던 개정안 2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절대적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는 집회의 자유와 배치되는 조항으로 오랫동안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입법 과제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11조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2. 집시법 11조 개정발의안 현황

현행 집시법 1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11조 1호의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그리고 3호의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현재까지 발의된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①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을 삭제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 ② 일부 장소를 삭제하는 안, ③ 금지 장소의 범위를 축소하는 안, ④ 금지 장소를 유지하며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sup>1)</sup>

1) 9건의 집시법 11조 개정발의안 현황은 뒤에 [붙임] 참고

	방향	요약
①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안	민중총궐기 폭력진압과정에서 쓰러진 백남기 농민 500일을 앞두고 2017년 3월 ‘광장을 열자! 백남기를 기억하자!’ 캠페인을 진행하며 입법청원 했던 법안 중 하나로 11조의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을 삭제하여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안
②	일부 장소 삭제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공관을 11조에서 삭제하는 안
③	금지 장소 범위 축소안	각 기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 범위를 30미터 이내로 축소하는 안
④	금지 장소 유지하며 예외 규정 신설안	국회의사당, 국무총리공관, 각급 법원에서의 집회가 각 기관의 기능과 안녕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도 ①과 ③의 경우처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집시법 11조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②와 ④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세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의 장소별로 이루어지면서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순차적으로 발의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이지만, 그 시기에 해당 결정의 장소에 관해서만 삭제하거나 해당 장소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집시법 11조가 지닌 절대적 금지 장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이 삭제 혹은 수정되더라도 대통령 관저나 헌법재판소 등 집시법 11조에 명시된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들은 계속 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입법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에 국한하지 않고 집시법 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에 대한 종합적인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3. 보이고 들릴 수 있는 집회여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총리 공관, 각급 법원에서의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각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집회·시위의 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요소라는 것을 이미 헌법재판소는 강조한 바 있습니다. 2003년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목적·내용과 집회의 장소는 일반적으로 밀접한 내적인 연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집회의 장소에 대한 선택이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면서 “집회 장소가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sup>2)</sup>

국제인권기준 또한 집회의 자유에서 ‘장소’가 가지는 의미를 중요하게 짚고 있습니다. OSCE/ODIHR 및 베니스위원회가 2010년 발표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Guidelines on Freedom of

2)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결정)

Peaceful Assembly)》은 “타겟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에서 “보이고 들릴 수 있음”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2016년 방한했던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집시법 11조를 언급하면서 “법을 통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이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자유와 제한의 상관관계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한 권리를 특권으로 만든다”고 우려하며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집시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sup>3)</sup>

집회의 자유에는 어디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인지 장소를 선택하고 결정할 자유가 포함되며 이는 집회의 목적에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장소에 대한 금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2016년 발표된 유엔의 <적정한 집회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sup>4)</sup>는 “특정한 장소나 시간, 또는 모든 장소와 시간에 완전히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본질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는 그러한 금지로 인하여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가 배제되기 때문”이라며 “집회에 대한 금지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4. 사전 금지를 금지하는 집회의 자유 원칙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집회라는 공통의 의사표현 행위를 통해 다양한 신념과 정책을 가진 집단이 공존할 수 있으며, 이것이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전 금지는 금지되는 것이 곧 집회의 자유 원칙입니다.

집시법 11조에서 집회가 금지된 장소들은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며 법제도가 논의되는 기관들입니다. 사회 구성원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어떤 장소보다 치열하게 여론이 형성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국가기구들은 행사하는 권력이 강력한 만큼 시민들의 견제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해야 할 의무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금지 장소 규정이 없을 경우 집회로 인해 해당 기관의 기능이 방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2009년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절대적 집회 금지 시간 규정이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될 것처럼 보수언론과 경찰은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삭제된 후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절대적 집회 금지 시간 조항 삭제 경험에 비추어도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 삭제에 따른 이러한 우려는 불식됩니다.

---

3)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2016년 6월, A/HRC/32/36/Add.2)  
[현황] 30. 집시법 제11조는 청와대(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외교기관을 포함한 주요 정부 부처와 외교 공관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평화로운 집회 장소에 대한 무조건적인 제한은 본질적으로 비례성에 어긋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법을 통해 집회의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이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자유와 제한의 상관관계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한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어버린다. 이러한 제한은 집회의 대상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제한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에 관한 권고] 집시법과 그 적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 :  
ii) 집회의 일시 및 장소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방지할 것

4)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비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적정한 집회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 (2016년 2월, A/HRC/31/66)

또한 현행 집시법 체계는 제한과 금지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집회의 성격과 양상에 따라 다양한 규제가 가능합니다. 국가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사전금지를 선택하기보다는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례성에 입각하여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제인권규약 또한 특정한 장소나 시간, 또는 완전히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본질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강조하는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5. 나가며 : 집시법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에 대한 재심 청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 재판의 첫 선고 결과,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집시법 11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 받거나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개정 시한인 집시법 11조에 대해 조속한 입법 논의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국회가 해야 합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 모두 이러한 방향에서 개선을 위한 시도로 볼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장소들에 국한되지 않는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일부 장소만을 삭제하거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적인 개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며 위헌적인 요소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와 배치되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규정인 집시법 11조 자체가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선출된 권력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향이 아니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시법 11조를 사실상 유지하는 입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국회가 고려할 입법의 방향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집시법 11조 전체를 폐지하는 집시법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 [붙임] 집시법 11조 개정발의안 현황

### ①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집회의 자유 보장안

발의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 / 2017.6.28. 발의 / 의안번호 7660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임. 이에 따라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그 제한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적 기관에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에 관한 규정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중략)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제11조 삭제

### ② 일부 장소 삭제안

발의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법률안
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안 / 2018.6.1. 발의 / 의안번호 13876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국회는 시민들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응집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상 주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듣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 근본적 기능을 고려하여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지점의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 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가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사당'을 삭제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안 / 2018.7.10. 발의 / 의안번호 14311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시위까지도 현행법상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의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 청사 및 공간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중에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가 있음. 이에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 및 국무총리 공간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삭제 - 제11조 제3호 '국무총리 공간' 삭제

③ 금지 장소 범위 축소안

발의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법률안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 2016.11.9. 발의 / 의안번호 3421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과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지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지역을 완화하는 한편,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제11조 누구든지 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또는 대통령 관저 경계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다. 1. 행진하는 경우 2.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되어 해당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해당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④ 금지 장소 유지하며 예외 규정 신설안

발의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법률안
이수혁 의원 대표발의안 / 2018.6.14. 발의 / 의안번호 13918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의 100미터 내에서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임.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회는 헌법적 기능에 따라 민의의 수렴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국회에서 과도하게 집회·시위 행위가 발현될 경우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도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집회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에서 국회의사당을 제외하되,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되거나 국회의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 삭제 -제11조 제2항 신설: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국회의 기능 및 업무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다.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안 / 2018.8.14. 발의 / 의안번호 14879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현행법 제11조제3호에 대하여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정당하나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을 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 보호와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공관을 대상으로	제11조 제3호 단서 신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국무총리 공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p>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도 집회·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p>	
<p>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안 / 2018.12.31. 발의 / 의안번호 17941</p>	<p>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집회 및 시위의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8. 7. 26. 2018헌바137)을 하였음. 이에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p>	<p>-제11조 1호 '각급법원' 삭제 -제11조 1의2호 신설: 각급 법원. 다만,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p>
<p>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안 / 2019.1.9. 발의 / 의안번호 18104</p>	<p>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집회 및 시위의 일률적·전면적 금지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8. 7. 26. 2018헌바137)을 하였음. 이에 법관의 직무상 독립이나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과 집회·시위의 자유 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p>	<p>-제11조 1호 '각급법원' 삭제 -제11조 1의2호 신설: 각급 법원. 다만, 법관의 직무상 독립 및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p>
<p>강장일 의원 대표발의안 / 2019.7.1. 발의 / 의안번호 21234</p>	<p>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및 각급 법원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의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한정위헌 결정을 하였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의사표현의 수단이며 특히 소수집단에게 의사표현의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임. 다만 집회·시위는 집단적 행동을 수반하므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 장소와 금지 시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변경 신고절차를 도입하여 현행법상 집회·시위 신고 후 수정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며, 미신고 집회·시위 등에 대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심야시간 주거지역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집회·시위에 대하여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조화를 이루고자 함.</p>	<p>-제11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1. 국회의사당.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p>